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안

의안 번호	791
----------	-----

제안년월일 : 2012년 6월 5일
제안자 : 서울특별시의회 안전관리 및
재난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1. 주 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의 대상사업에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방재개념의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사업”을 신규 추가해 줄 것을 건의한다.

2. 제안이유

-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적 집중호우가 발생으로 지역주민들의 잦은 침수피해와 대규모 산사태 등 자연재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대처하고 있음에도 지방재정의 한계로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지역 주민의 수해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 더욱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시설기준에 따라 각종 하수도시설을 완비하고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상 외의 국지적인 집중호우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긴급한 지원대책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할 것임.

- 서울시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주민의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도 있게 대응방안을 연구·검토한 결과, 궁극적으로 기존 하수도시설의 정비만으로는 이러한 국지적인 집중폭우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기존의 하수도시설과 별개로 추가적인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임.
- 이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빗물저류배수시설을 지방재정으로만 충당하기가 역부족인 관계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사업”을 추가시켜 일정비율의 국고지원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3. 제안경위

건설위원회 오봉수 위원 외 1명이 서면으로 동의한 건의안을 제4차 안전관리 및 재난지원 특별위원회(2012. 6. 5)에서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전원이 찬성함으로써 특별위원회안으로 채택되어 제안하게 됨.

4. 건의문 이송처 : 환경부, 기획재정부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첨부 : 건의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건의문

-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적인 집중호우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침수피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침수지역의 완벽한 해소를 위해 다른 어떠한 사업보다 우선하여 대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한계로 인하여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투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처럼 관련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언제 또 다시 지역주민의 침수피해가 발생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시설기준에 따라 각종 하수도시설을 완비하고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상외의 국지적인 집중호우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점은 중앙정부 차원의 긴급한 지원대책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할 것 입니다.
- 이에 서울시는 기상이변에 따른 저지대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도 있게 대응방안을 연구·검토하였고, 궁극적으로 기존의 하수도시설로는 최근의 국지성 집중폭우에 따른 침수피해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기존의 하수도시설과 별개로 추가적인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서울시에서는 2011. 7. 27 폭우에 대한 대책으로 총연장 19.1km, 총사업비 7,817억 원을 10개년 계획을 세워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형편 때문에 적기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처럼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은 그 규모상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관계로 부족한 지방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천만 서울시민을 비롯한 전 국민의 수해안전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안전관리 및 재난지원 특별위원회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사업”을 최소 70%의 기준보조율로 신규 추가해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 [첨 부]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안의 수정조문대비표
2. 서울시 신규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도입 검토 현황

2012년 월 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별표 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제4조제1항 본문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33%;">사업</th> <th style="width: 33%;">기준보조율(%)</th> <th style="width: 33%;">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111.(생략)</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td> <td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td> <td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112.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td> <td style="vertical-align: top;">사업 수행의 근거 법령·성격에 따라 정률(100%, 80%, 70%, 50%, 40%, 30%, 20%) 또는 정액 보조</td> <td style="vertical-align: top;">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대상사업 명칭과 기준보조율을 분명하게 밝히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td> </tr> </tbody> </table>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1.~111.(생략)	(생략)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112.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사업 수행의 근거 법령·성격에 따라 정률(100%, 80%, 70%, 50%, 40%, 30%, 20%) 또는 정액 보조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대상사업 명칭과 기준보조율을 분명하게 밝히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별표 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제4조제1항 본문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33%;">사업</th> <th style="width: 33%;">기준보조율(%)</th> <th style="width: 33%;">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111.(현행과 같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12. 대심도 빗물 저류배수시설</td> <td style="text-align: center;">70</td> <td></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113.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td> <td style="vertical-align: top;">사업 수행의 근거 법령·성격에 따라 정률(100%, 80%, 70%, 50%, 40%, 30%, 20%) 또는 정액 보조</td> <td style="vertical-align: top;">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대상사업 명칭과 기준보조율을 분명하게 밝히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td> </tr> </tbody> </table>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1.~111.(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12. 대심도 빗물 저류배수시설	70		113.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사업 수행의 근거 법령·성격에 따라 정률(100%, 80%, 70%, 50%, 40%, 30%, 20%) 또는 정액 보조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대상사업 명칭과 기준보조율을 분명하게 밝히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1.~111.(생략)	(생략)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112.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사업 수행의 근거 법령·성격에 따라 정률(100%, 80%, 70%, 50%, 40%, 30%, 20%) 또는 정액 보조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대상사업 명칭과 기준보조율을 분명하게 밝히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1.~111.(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12. 대심도 빗물 저류배수시설	70																								
113.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사업 수행의 근거 법령·성격에 따라 정률(100%, 80%, 70%, 50%, 40%, 30%, 20%) 또는 정액 보조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대상사업 명칭과 기준보조율을 분명하게 밝히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표] 서울시 신규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도입 검토 현황

연번	자치구	위치	침수예상강우강도(mm/h)	과거피해규모	연장(km)	예상사업비(억원)
1	강서·양천	신월동~안양천	40~50	주택·상가 7,751개소 (75mm/h, 2001년)	3.4	1,435
2	종로	효자동~청계천	75~95	광화문·청계천·서소문, 주택·상가 115개소 (75mm/h, 2001년)	2.0	396
3	용산	삼각지역~한강	45~55	용산지하차도, 주택·상가 60개소 (68mm/h, 2010년)	2.0	861
4	동작	신대방역~여의도	45~55	주택·상가 4,333개소 (102mm/h, 2001년)	3.2	1,363
5	동작·서초	사당역~한강	40~50	주택·상가 4,221개소 (110mm/h, 2011년)	3.6	1,595
6	서초	강남역~한강	40~50	주택·상가 7,764개소 (93mm/h, 2001년)	3.1	1,317
7	강동	길동~한강	50~60	주택·상가 1,025개소 (56mm/h, 2011년)	1.8	850